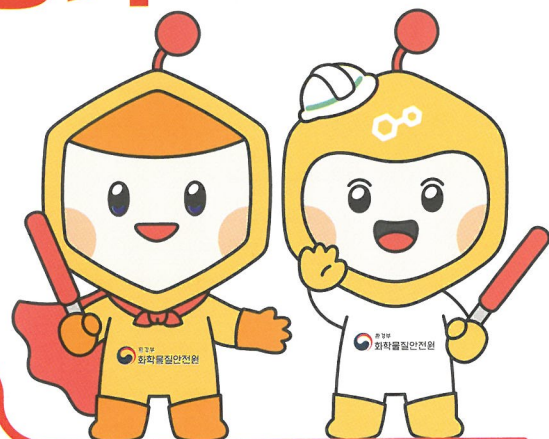
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운반용기

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안내

미루지 말고 지금 **꼭!** 받으세요



적용대상?

금속제 용기,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,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
최대 용적이 **450 L 초과 3,000 L 이하**인 용기

※ 관련근거 :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),
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),
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(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)



[금속제용기]



[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]



[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]



사용연한?

사용연장검사

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(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)을 초과 사용할 수 없으며,
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**2년 6개월 이내**에
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(→ 검사기관 : 한국소방산업기술원)

용기의 사용연한

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
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**5년 이내**의 것이어야 한다.



적용시점?

2023. 1. 1. 시행. 다만, 2023. 1. 1. ~ 12. 31.까지는 계도기간 운영

신청문의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T. 031-289-2934